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 수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것이 교육개혁의 취지에 일치한다고 인식하고, 이에 일부 사학재단과 교장단의 기득권 옹호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1998. 12. 29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일동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 등록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 의견서

- 청원명 : 공공기관에서의 서울시 등록전세버스 사용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
- 채택의견
-청원의 요지는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서울시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주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서울시내 전세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타 시·도 동종업체의 시내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고, 서울시내 소재한 각급 공공기관이 전세버스 이용시에는 서울시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우선 활용토록 행정제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타 시·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서울시내

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위반내용 3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대상이 되며, 타 시·도에 등록된 전세버스가 영업외에 차고지가 아닌 시내에서 밤샘 주차할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위반내용 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이 가능하므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

-그리고 서울시등록전세버스의 시내소재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권장 내용은 전세버스의 사업구역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용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등록업체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불법영업, 덤핑계약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어 전세버스운송사업계의 운송질서 확립이 시급한 실정임.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103

제출년월일 : 1998. 10. 7.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1. 안건명 : 목동 405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 결정 및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 2. 입안내용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결정

위 치	용도지역변경		면적(m ²)	용도지구 지정	비 고
	당 초	변 경			
양천구 목동 405번지 일대	일반주거지	일반상업지	62,860	제1종미관지구 (62,860m ²)	목동 중심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 3.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
○목동 405번지 일대는 목동 중심축에 위치하나 목동 택지개발 사업시 제외된 지역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구역 지정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단절된 목동중심축의 상업기능을 연속화하고 서울시 서남권 지역중심 기능으로 육성 발전시킴은 물론, 계획적인 개발을 추

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동시에 집단 미관지구로 결정코자 함.

- 4. 참고사항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 일반주거지역
○주민의견 청취결과 : 4건(미반영)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결정권자 : 서울특별시